

의안번호	2220104
의 퇴 인	김태규 의원
회 답 일	2026.8.27.
추 계 번호	26E36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난임시술 지출분
공제율 인상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 및 난임시술비 지출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20%, 30%에서 100%로 인상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8년 112억원 등 2028~2032년까지 5년간 총 562억원(연평균 1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난임시술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안 제59조의4제2항)	-112	-112	-112	-112	-112	-562	-11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의4제2항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 합계액(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공제율) (본인, 장애인 등 지급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급분) (현행) 20% → (개정안) 100% (난임시술 지출분) (현행) 30% → (개정안) 100%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4제2항(특별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시행일 및 징수기준을 고려하여 2028~2032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해당 과세연도 귀속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다음연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징수기준)
-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른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치에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전체 공제액 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 공제액 및 난임시술비분 공제액 비중을 곱해 각 지출분별 공제실적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연도(2025년) 세수효과를 추계
 - 「조세지출결산서」는 전체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실적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세부적으로 구분(본인 등 지출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 난임시술비 지출분)된 세액공제 실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임
 -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액 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 공제액 및 난임시술비 지출분 공제액의 비중을 추정함
- 기준연도(2025년)의 세수효과가 향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각 지출분별 세부 조세지출 실적 자료의 습득에 한계가 있고, 2023년 이후 미숙아·선천성이상아분 의료비 지출액 및 난임시술비분 의료비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증감을 반복하는 등 향후 각 지출액의 변화 추세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2022년까지는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이 20%였으며, 2023년 공제율 10%p 인상과 함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됨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분 의료비 지출액) 2023년 58억원, 2024년 66억원, 2025년 182억원
 - (난임시술비분 의료비 지출액) 2023년 633억원, 2024년 431억원, 2025년 569억원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의료비 지출 대상 및 의료비 종류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적용
 - 2022년까지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만 2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며, 2023년부터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이 10%p 인상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20% 공제가 신설됨

[표 2]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구 분	공제대상 의료비 한도	공제율	
		현 행	개정안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간 700만원	15%	(현행과 같음)
본인·6세 이하·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100%
난임시술비	—	30%	100%

-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른 동 제도의 감면실적은 2021년 1조 1,121억원, 2025년 1조 5,72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3]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감면액	11,121	12,088	13,634	15,118	15,722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조세지출결산서」(2026)

나. 추계 방법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른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의 총급여구간별 의료비 지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동 자료의 의료비 지출액은 근로자의 연간 총 의료비 지출액 자료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분(총급여액의 3% 초과분)과 차이가 있음

[표 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 현황: 2024 귀속연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 구간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인원	의료비 지출액	인원	의료비 지출액	인원	의료비 지출액
전체	4,340,814	24,125,934	3,658	18,186	21,482	56,866
결정세액이 있는자	3,300,268	18,752,945	3,165	16,235	16,571	41,095
1천만 이하	—	—	—	—	—	—
1.5천만 이하	167	173	—	—	—	—
2천만 이하	17,353	21,725	2	2	2	1
3천만 이하	319,830	566,400	63	97	74	70
4천만 이하	435,123	1,116,590	65	112	533	652
4.5천만 이하	221,621	765,044	67	123	926	1,493
5천만 이하	225,707	909,397	84	155	1,330	2,475
6천만 이하	435,860	2,153,086	285	693	3,540	7,596
8천만 이하	694,343	4,477,243	735	5,476	5,138	13,355
1억 이하	458,377	3,659,003	545	2,258	2,368	6,847
2억 이하	461,689	4,607,365	1,192	6,126	2,558	8,145
3억 이하	24,330	348,833	114	1,071	93	431
5억 이하	5,060	101,445	13	122	9	30
10억 이하	740	22,334	—	—	—	—
10억 초과	68	4,309	—	—	—	—
결정세액이 없는자	1,040,546	5,372,989	493	1,951	4,911	15,771
1천만 이하	2,702	3,474	1	0	1	0
1.5천만 이하	13,912	25,653	8	20	10	29
2천만 이하	70,854	178,804	9	21	43	89
3천만 이하	415,706	1,567,340	123	339	702	1,758
4천만 이하	318,718	1,614,224	91	218	1,653	4,382
4.5천만 이하	91,020	596,016	50	138	831	2,438
5천만 이하	57,547	454,916	61	223	686	2,435
6천만 이하	50,132	533,432	104	523	708	3,056
8천만 이하	17,903	327,813	40	186	265	1,496
1억 이하	1,543	57,077	2	72	10	82
1억 초과	509	14,241	4	209	2	6

자료: 국세청

- 위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비세액공제액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에 대한 공제액과 난임시술비 지출분에 대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총급여구간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 현황을 바탕으로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을 산출하고, 1인당 총급여액의 3%를 제

외하여 공제대상금액을 산출함

- 1인당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자의 총급여구간별 총급여 합계를 인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를 활용함
- 공제대상금액 산출 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순차적(본인 외 기본 공제대상자 → 본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난임시술 순으로 적용)으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각 지출분별 공제대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각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의 세부 구성에 관한 자료를 습득할 수 없어 지출분 각각에 대해 총급여액의 3%를 일괄적으로 제외함

※ (예시) 총급여액 6,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 200만원(본인 외 110만원, 본인 30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50만원, 난임시술 1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3%(180만원)는 본인 외 지출분에서 110만원, 본인 지출분에서 30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에서 40만원씩 순차적으로 차감되어 최종적인 공제대상금액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 10만원, 난임시술비 10만원임

- 공제대상금액에 지출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1인당 공제세액을 산출하고,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신청 인원을 곱해 전체 공제세액을 추정함
 - 총급여액의 3%를 제외한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0으로 봄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인원 모두 의료비를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하여 실제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
- 추정 결과, 전체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에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 공제액 및 난임시술비 지출분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067%, 0.192%로 나타남

[표 5]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 추정: 2024 귀속연도

(단위: 백만원)

총급여 구간		1인당 총급여액 ¹⁾ (A)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1인당 의료비 지출액(B)	1인당 공제액 [C=max(B-A× 3%,0)×15%]	총 공제세액 (억원 C×인원 ²⁾)	1인당 의료비 지출액(D)	1인당 공제액 [E=max(D-A× 3%,0)×20%]	총 공제세액 (억원 E×인원 ²⁾)	1인당 의료비 지출액(F)	1인당 공제액 [G=max(F-A× 3%,0)×30%]	총 공제세액 (억원 G×인원 ²⁾)
결 정 세 액 이 있 는 자	1천만 이하	6	0.0	0.0	0	0.0	0.0	0.0	0.0	0.0	0.0
	15천만 이하	14	1.0	0.1	0	0.0	0.0	0.0	0.0	0.0	0.0
	2천만 이하	18	1.3	0.1	19	1.0	0.1	0.0	0.5	0.0	0.0
	3천만 이하	25	1.8	0.2	484	1.5	0.2	0.1	0.9	0.1	0.0
	4천만 이하	35	2.6	0.2	991	1.7	0.1	0.1	1.2	0.1	0.3
	45천만 이하	42	3.5	0.3	724	1.8	0.1	0.1	1.6	0.1	0.9
	5천만 이하	47	4.0	0.4	882	1.8	0.1	0.1	1.9	0.1	1.7
	6천만 이하	55	4.9	0.5	2,153	2.4	0.2	0.4	2.1	0.1	5.3
	8천만 이하	69	6.4	0.7	4,557	7.5	1.1	7.9	2.6	0.2	8.1
	1억 이하	89	8.0	0.8	3,650	4.1	0.3	1.6	2.9	0.1	1.5
	2억 이하	130	10.0	0.9	4,205	5.1	0.2	2.9	3.2	0.0	0.0
	3억 이하	237	14.3	1.1	264	9.4	0.5	0.5	4.6	0.0	0.0
	5억 이하	373	20.0	1.3	67	9.4	0.0	0.0	3.3	0.0	0.0
결 정 세 액 이 없 는 자	10억 이하	661	30.2	1.6	11	0.0	0.0	0.0	0.0	0.0	0.0
	10억 초과	1,974	63.4	0.6	0	0.0	0.0	0.0	0.0	0.0	0.0
	1천만 이하	5	1.3	0.2	5	0.0	0.1	0.0	0.0	0.1	0.0
	15천만 이하	12	1.8	0.2	31	2.5	0.4	0.0	2.9	0.8	0.1
	2천만 이하	17	2.5	0.3	213	2.3	0.4	0.0	2.1	0.5	0.2
	3천만 이하	25	3.8	0.5	1,874	2.8	0.4	0.5	2.5	0.5	3.7
	4천만 이하	34	5.1	0.6	1,927	2.4	0.3	0.2	2.7	0.5	8.0
	45천만 이하	42	6.5	0.8	721	2.8	0.3	0.1	2.9	0.5	4.2
	5천만 이하	47	7.9	1.0	560	3.7	0.4	0.3	3.5	0.6	4.4
	6천만 이하	54	10.6	1.4	679	5.0	0.7	0.7	4.3	0.8	5.7
	8천만 이하	66	18.3	2.5	439	4.7	0.5	0.2	5.6	1.1	2.9
	1억 이하	87	37.0	5.2	80	36.0	6.7	0.1	8.2	1.7	0.2
	1억 초과	162	28.0	3.5	18	52.3	9.5	0.4	3.0	0.0	0.0
계(억원)		-	-	-	24,554	-	-	16.4	-	-	47.3

주: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한 총급여구간별 전체 근로자의 총급여액 합계를 해당 구간 근로자의 수로 나누어 산출

2) 인원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인원([표 4]의 '인원' 열)으로, 모든 신청 인원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전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고 가정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2025년 국세통계연보」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25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감면실적(잠정치, 1조 5,920억원)에 앞서 산출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 공제액 비중(0.067%) 및 난임시술비 지출분 공제액 비중(0.192%)을 각각 곱해 각 지출분에 따른 현행 공제세액을 추정하고, 공제율 인상에 따른 추가 공제액 및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2025년 실적은 신고·진도비를 고려한 수치로 잠정 실적치로 볼 수 있음
- 공제율 인상에 따른 추가 공제액만큼 실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개별 근로자의 결정세액별로 공제율 인상에 따른 실제 공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난임시술비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 인원, 공제실적 및 해당 근로자의 결정세액에 대한 자료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 공제액만큼 실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
 - 예를 들어, 개별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추가 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실제 추가 공제는 결정세액만큼만 이루어지게 됨

[표 6] 미숙아·선천성이상아분 및 난임시술비분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2025년
(단위: 억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 공제액			난임시술비 지출분 공제액			전체 세수효과 -(C+F)
현행(추정치) (A=15,722 ¹⁾ ×0.067%)	개정안 (B=A ×100/20)	추가 공제액 (C=B-A)	현행(추정치) (D=15,722 ¹⁾ ×0.192%)	개정안 (E=D ×100/30)	추가 공제액 (F=E-D)	
10	52	42	30	101	70	-112

주: 1)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른 2025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귀속기준) 소득 발생연도 기준,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

- 2027~2031년 각각 112억원의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공제율 인상분	-42	-42	-42	-42	-42	-210	-42
난임시술 공제율 인상분	-70	-70	-70	-70	-70	-352	-70
합계	-112	-112	-112	-112	-112	-562	-112

□ (징수기준) 소득세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하면, 개정안에 따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분 및 난임시술비 지출분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20%, 30%에서 100%로 인상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8년 112억원 등 2028~2032년까지 5년간 총 562억원 (연평균 1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징수기준)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난임시술분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안 제59조의4제2항)	-112	-112	-112	-112	-112	-562	-11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